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5월 30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조미선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요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헌혈자원 감소로 혈액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
- 헌혈자에게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여 헌혈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혈액 공급의 안정을 도모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가. 헌혈자에게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 지급 규정 신설 (안 제9조제7항)
- 나. 기타 관계법령 및 미비점 정비 (안 제1조 외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3년 6월 5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447-701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31, · 팩 스 : 031)375-2875
 - 전자메일 : blue6017@korea.kr

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”을 “조례는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제1항과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”을 “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의3제1항과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판단되는”을 “시장이 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1. 「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에 따른 오산시 본청, 사업소, 하부 행정기관(동)
3. 시가 설립·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

제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시장은 관내에서 헌혈(전혈, 성분헌혈)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제1항 중 “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의4”를 “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의6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시장이”를 “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위원의 임기)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7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헌혈권장활동”이란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제1항과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.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제4조(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(이하 “사업계획”이라 한다)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헌혈장소 설치 지원)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고</p>	<p>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의3제1항과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의3제2항-- ----- -----.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<u>보건복지부장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헌혈장소 설치 지원) ----- ----- -----</p>

자 할 경우 재정적·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오산시청 및 산하 보건소, 도서관 등 공공장소

2.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산하 사업소

3. 시 투자기관에서 관리·운영하는 장소

4. 그 밖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

제9조(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 ① ~ ⑥ (생략)

<신설>

제10조(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의4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시민·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오산시 헌혈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-----.

1. 「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에 따른 오산시 본청, 사업소, 하부행정기관(동)

<삭제>

3. 시가 설립·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

4. -----
----- 시장이 인정하는 -----

제9조(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시장은 관내에서 헌혈(전혈, 성분헌혈)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) ① -----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의6-----

-----.

② (생략)

제11조(협의회 구성) ① (생략)

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, 당연직 위원은 시 부시장과 헌혈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③ (생략)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<신설>

제17조(수당 등) 협의회 회의에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협의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-----
----- <후단 삭제>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11조의2(위원의 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<삭제>

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오산시
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
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
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
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협
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
지 아니하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
정한다.

<삭 제>

【별첨】

관계법령 발췌서

【혈액관리법】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의3(헌혈 권장 등)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의6(헌혈추진협의회 구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·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【혈액관리법 시행령】

제2조의3(헌혈의 권장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,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·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.